

3. 연가보상비(영 제18조의5)

가. 지급대상

- 1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 지급제외자

가)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방학기간 중에도 방학 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하고 완화된 근무여건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나)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다)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라)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퇴직된 사람

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

-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시장·군수·구청장 등)

바) 영 제3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 * 국외파견공무원이 국내에 복귀하여 근무하게 된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 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하고,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공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권장 연가 일수는 연가보상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참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연가 사용의 권장)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3)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운영

연가활성화를 위해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외대상자 지정은 아래를 참고하여 각 기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순서(예시) >

- ① 6월 30일 지급기준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가 10일 미만인 자
- ② 부서장 성과목표 연가사용 활성화 지표 일수와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5일을 합산한 것보다 총 연가일수가 적은 자
- ③ 6월 30일 지급기준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근거해 파견근무중인 자
- ④ 하반기(7.1.~12.31.)중 퇴직 예정자
- ⑤ 하반기(7.1.~12.31.)중 휴직 예정자
- ⑥ 본인이 예외대상자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 ⑦ 연가 사용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기관 또는 그 밖에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인해 연가보상비 정산·환수 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나. 지급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4

다. 지급액

- 예산의 범위안(20일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아래 2)의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액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을 선택한 기관의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

나)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 해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가)에 의해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

< 연가보상비 >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times$ 1/30 $\times$ 5일
-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times$ 1/30 $\times$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 *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7월에 지급받은 연가보상일수(5일) 미만일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환수하되, 환수금액 계산은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을 따른다.
(예) 7월 보수지급일에 연가보상비를 5일분 지급받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3일인 경우 환수금액 : (12.31일 기준 월봉급액 86% $\times$ 1/30 $\times$ 3일)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2)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액

가)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times$ 1/30 $\times$ 연가보상일수

나)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동일 방법(연가잔여일수 10일 이상자에게 5일 보상)으로 지급

(2)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times$ 1/30 $\times$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3) 저축연가의 보상방법

- 보상비 지급이 가능(「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함)한 저축연가의 보상비는 각 연가의 저축 당해연도 12월 31일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 '20년도 4일, '21년도 4일, '22년도 6일 저축 연가를 '23년까지 사용하지 못 한 경우(「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로 한정) 보상비 지급액

$$= ('20.12.31. \text{월봉급액의 } 86\% \times 1/30 \times 4\text{일}) + ('21.12.31. \text{월봉급액의 } 86\% \times 1/30 \times 5\text{일}) + ('20.12.31. \text{월봉급액의 } 86\% \times 1/30 \times 6\text{일})$$

※ 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제3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다음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가보상비의 지급 대상이 아님.

< 참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

-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삭제>
- ③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4) 월봉급액 계산방법

- 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한다.
- 나)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중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 중 기본 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 <‘제5장-VI-4-가’ 참조>은 84%)로 한다.
- 다) 연도 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직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 라) 해당 연도 중 승진·강임·전직·승급 등으로 직급(계급) 및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한다.

5)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 연가보상일수 계산은 기본적으로 ①번으로 하되, 제외기간 예시 등에 해당하는 사례는 ②번으로 함

$$\text{①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text{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 - \text{사용한 연가일수}$$

- 가) 미사용연가일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말하며,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란 같은 영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따라 재직기간별로 부여받은 연가일수에서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제1항에 따른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각각 공제한 일수 및 제3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연가일수를 말하며, 연가일수 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에 따라 공제된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나) 제외기간은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말한다. 각 제외기간은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한다.

$$\text{②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text{미사용연가일수} \times \frac{12\text{개월} - \text{제외기간(개월)}}{12\text{개월}}$$

(예) • 지급대상자인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 영 제3조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30일 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공무상 병가, 사병으로 군입대시 입대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의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

- '24.12.1.자로 퇴직한 공무원(재직기간 6년 이상)이 '25.7.1.자 신규임용된 후 1개월간 교육파견을 실시하고 연가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가보상일수(법정연가일수는 21일)
- 복무규정에 따라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6개월)과 1개월 이상의 교육파견 기간(1개월)을 반영하여 이를 공제한 연가일수를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부여하여야 함

$$\text{연가일수} = 21\text{일} \times \frac{5\text{개월(해당연도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12\text{개월}} = 9\text{일}$$

* 소수점 이하 반올림함(「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참조)

⇒ 계산된 연가일수는 9일이며, 이후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제외기간도 없으므로 9일분 보상 가능

- 연가일수를 21일 부여받은 공무원이 '25.6.1.부터 7.10.까지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연가는 10일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일수(권장연가일수 10일 미지급하기로 한 기관)
- 30일 이상 연속된 해외출장은 복무규정에 따른 연가 공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연가보상시 '제외기간'에 해당됨. 제외기간은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으므로, 예시에서 15일 미만인 10일은 버리고 1개월만 제외기간으로 반영됨

$$\text{연가보상일수} = \frac{11\text{일}}{(\text{미사용 연가일수})} \times \frac{12\text{개월} - 1\text{개월}}{12\text{개월}} = 10\text{일}$$

⇒ 10일분 보상(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 둘째자리 이하 절사)

라. 지급방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제일수 및 제2항, 제3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사람이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초과하여 사용한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보고 결근시 보수감액 방법에 따르며, 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같은 규정 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일수에서 차감하되, 저축연가일수가 없을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일수만큼 결근으로 처리함

마.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

- 1) 지급기관 : 지급기준일 현재의 보수지급기관에서 지급
- 2) 지급시기 : 상반기는 7월 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하반기는 12월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바. 행정사항

- 각 부서의 장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로부터 15일전 까지 복무관리상황을 보수지급관서의 장 또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연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 통보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9. 12. 31.>

1. 병가(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 나. 퇴직일부서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편·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⑦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 재직기간이 9개월인 신규공무원이 6.30일까지 연가를 1일 사용하고 12.31까지 잔여 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법정연가일수는 11일)
 - 잔여연가일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보상받을 연가보상일수가 없음
-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6.30일까지 연가 10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2월 31일까지 추가로 5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25.6.30.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25.8.1.로 호봉승급하여 '25.12.31.기준 7급 11호봉임)
 -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433,910\text{원}(3,027,3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5 = 433,910\text{원})$ 을 지급함
 - 12월 31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 6일(21일-사용한 연가일 1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537,340\text{원에서}(3,124,1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6 = 537,340\text{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433,910\text{원}$ 을 제외한 $103,430\text{원}$ 을 지급함
- 연가일수가 23일인 공무원이 6.30일까지 연가를 10일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2월 31일까지 추가로 10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25.6.30.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25.8.1.로 호봉승급하여 '25.12.31.기준 7급 11호봉임)
 -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433,910\text{원}(3,027,3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5 = 433,910\text{원})$ 을 지급함
 - 12월 31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 3일(23일-사용한 연가일 20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268,670\text{원에서}(3,124,1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3 = 268,670\text{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433,910\text{원}$ 을 제외한 $165,240\text{원}$ 을 환수함
- 연가일수가 22일(법정연가일수 21일, 병가미사용 연가가산 1일)인 공무원이 '25.1.1.~6.30.까지 12일의 연가를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25.7.28.부터 정직처분 1개월을 받고, '25.11.14.~11.15.까지 2일의 연가를 추가로 사용(총 연가사용일수는 14일)한 경우 연가보상비 산정방법
 -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에 대해 지급함
 - 22일(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 12일(정직처분 전 실시한 연가일수) = 10일(사용 가능 연가일수)

그러나, 정직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처분기간만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직기간(1개월)이 본인의 연가가능일수(10일)를 초과함에 따라 향후 연가 실시 및 연가보상비 지급이 불가하며 정직 후 사용한 연가(2일)는 결근처리를 해야 하며 7월에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았으므로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월봉급액 기준으로 환수함

-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25.6.30. 이전에 연가 11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25.9.1.~12.31.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한 경우 연가보상비 산정방법 ('25.6.30.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25.8.1.로 호봉승급하여 '25.12.31.기준 7급 11호봉임)
 -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433,910원($3,027,3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5 = 433,910\text{원}$)을 지급함
 - 해당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21일에서 휴직기간을 고려하여 월할 계산한 사용 가능 연가일수가 14일($12\text{개월} - 4\text{개월} / 12\text{개월} \times 21\text{일}$)이며, 14일 중 이미 실시한 연가 11일을 공제하고 남은 3일이 미사용연가일수임, 따라서 12월 연가보상비 지급일에는 12.31.현재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268,670원에서 ($3,124,1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3 = 268,670\text{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433,910원을 제외한 165,240원을 환수함
-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25.6.30.까지 연가 7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8월말까지 3일의 연가를 사용 후 '25.8.31.에 명예퇴직한 경우의 연가보상비 산정방법('25.6.30.기준 5급 15호봉이었으며 '25.8.30.에도 월봉급액은 동일함)
 -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643,880원($4,492,2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5 = 643,880\text{원}$)을 지급함
 - 퇴직자의 경우 퇴직 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여 연가일수를 다시 산출하여야 하므로, 복무예규에 따라 실제 근무한 8개월에 대해 연가일수를 산출하면 14일이 사용가능한 연가일수이며, 14일중 이미 사용한 10일을 제외한 4일에 대해서만 연가보상이 가능한데 이미 7월에 5일분을 지급하였으므로, 1일분에 대해 환수하여야 함